

맑은물사업소 종합감사
(2015. 10. 6 ~ 10. 23)

감사결과 공개문

제 목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미실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제4조(시설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수질 검사) 규정에서는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에서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 여부 검토를 실시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지방상수도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지정 폐지 검토를 실시하지 않고 관리·운영, 수질검사 등 대행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 그 결과 20××년부터 20××년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18개소에 관리·운영, 수질검사(분기별) 대행 용역비 ##,###천원을 낭비하는 원인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포항시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에 따라 지방상수도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지정 여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세입조치 미이행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에서는 맑은물사업소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법인신용카드사용에 따라 발생한 모든 포인트는 당해연도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를 「표」와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원을 세입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현황

(단위 : 원)

구분	카드사	포인트 적립금	비 고
합 계		##,###	
맑은물사업소	BC카드	##,###	20××.××.××기준
맑은물사업소	농협NH카드	##,###	20××.××.××기준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세입조치 하지 않은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원을 즉시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조치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수도법」 제74조 1항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결과를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 또한 「수도법시행령」 제31조의2에 의하면 기술진단 결과의 보고는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 시설계획수립결과의 보고는 시설개선계획 시행후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 ××월 기술진단을 실시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별도의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수도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수도법제74조에 따라 수도시설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분할발주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동일 구조물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동일시기에 유사한 시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분리 발주할 법적근거가 없는 한 물품·공사·용역의 성질이나 규모를 감안하여 추정가격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발주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도 생활민원 하수도준설공사 외 ★건, 하수도개보수 공사 외 ★건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함에도 분할 발주하여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1. 지방계약법에 따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하고, 제2항에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며,

○ 공무원의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배우자포함)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길 때에는 지체 없이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가족수당 지급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지급대상사유 아님에도 가족수당 부양가족신고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 외 ★★명에게 20××년 ×월부터 20××.×월까지 가족수당 #,###천원과 복지포인트 #,###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 재정관리과장은 과다지급한 가족수당 #,###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고
- ○○○○○과장은 과다지급한 복지포인트 #,###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로서, 회계 관계 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별표>2호 시책 또는 지역홍보, <별표>4호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시 집행하여야 하며, 축조의금, 사적인용도, 선심성경비,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경비 집행은 금지되어 있다.
-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책 또는 지역홍보,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행사시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시책 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검침원,

공사관계자, 누수신고자, 해당소속 직원 등에게 식사제공 및 격려품 구입경비 총 ★★건 #,###천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업무추진비 집행시 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집행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관외출장여비 지출증빙서류 미첨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국내여비(202-01) 회계담당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요청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출장공무원은 출장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출장복명서나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비를 지출하여야 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 ×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외출장여비를 지출하면서 20××년도 ★건에 #,###천원, 20××년도 ★건 ###천원에 대하여 증빙서류없이 관외여비를 지출하는 등 회계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관외출장여비 지급시 관련증빙자료 첨부하는 등 세출예산집행기준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선급금 반환금 세입조치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지방재정법」 제65조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104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경비 등이 있고,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하며,
- 「포항시재무회계규칙」 제75조, 제76조, 제77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하고,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 따라서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은 해당 연도에 지출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명백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비 외에는 보관·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 「상수도블록화시스템 구축공사」의 계약자 지분포기에 따른 선급금 ##,###,###원(이자포함)을 전기요금 자동이체 관리계좌로 반환받은 후 즉시 세입처리하여야 함에도, 원금

##,###,###원은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입금한 후 ★년이 지난 20××.×.×.에 세입처리하였으며, 이자 #,###,###원은 감사일 현재까지 전기요금 자동이체 관리계좌에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선급금 반환금 이자 #,###천원 즉시 세입조치 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카드 결제계좌 관리소홀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IV.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고,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 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9조(출납원의 장부 등의 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감사원을 명하여 당해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II.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0.출납원 소관의 검사실시에 의하면 경리관은 회계담당자의 교체 및 인수인계시 출납원 소관의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담당공무원은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을 수시대조하여 오차에 대해 원인을 파악 후 정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수시로 신용카드 결제계좌의 잔액과 결제 예정액이 일치됨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사용 대조 및 계좌관리를 소홀히 하여 계좌잔액, 미입금액, 향후 대금 집행액을 비교하여 20××.××.××일 기준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과에서는 #,###원, ○○과에서는 ###,###원, ○○○○과

에서는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법인 신용카드 계좌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 ○○○과장, ○○과장, ○○○○과장은 카드결제 계좌 잔액 ##,###원(○○○○○○과 ##,###원 ○○○과 #,###원 ○○과 ##,###원, ○○○○과 #,###원)을 즉시 세입처리하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휴대용 단말기 물품관리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목별 세부 집행 지침 상 자산취득비(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에 의하면,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별표 1(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에서 내용연수가 1년 이상, 취득단가 1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한 물품은 비품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공공운영비로 태블릿PC 2대를 2년 약정으로 계약하여 구매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으로 미등록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포항시물품관리조례에 따라 미등록한 휴대용단말기를 물품으로 등록하는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수도 폐계량기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포항시 물품 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에 따르면 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물품사무 관리자의 지정)제1항에 따라 물품의 운용은 해당과에서 하도록 하며,

○ 또한, 같은 조례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의 불용결정) 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시설물에서 제거되어 활용할 수 없는 물품 등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수도계량기 수불대장에 입고, 출고 내역만 기재하고 실제 폐계량기의 현황은 기록하지 않아 현재 폐계량기의 대수를 정확히 파악 대조할 수 없으며, 매년 폐계량기를 매각처리하여 불용물품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20××년 #,###대, 20××년 ##,###대를 매각한 이후로 그대로 방치하는 등 폐계량기에 대하여 회수·보관 및 매각 등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포항시물품관리조례에 따라 폐계량기에 대하여 회수,보관 및 매각하는 등 폐계량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사후관리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 ○○○○○○○과에서는 「수도법」 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세대, 모범업소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다.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게 수도 요금을 할인 해 줄 수 있고, 수돗물의 요금 할인을 등 수돗물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요금 등의 감면) 규정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세대(월 5톤), 「식품위생법」 또는 착한가격(물가안정)에 의한 모범업소(월 30톤), 사회복지 보장시설(1명당 월 3톤의)에 해당되는 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으며 감면액은 일반 회계에서 보전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에서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자격 중지자, 전출자, 사망자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하여 수도요금 감면을 중지조치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세대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가구)중 자격의 중지, 전출 등으로 중지 사유가 발생

하여 요금감면을 중지 처리해야 함에도 변동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감면 중지 처리함에 따라 감면대상자와 중지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관리하고 있으며

- 감사기간 동안 감면신청대상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격 중지, 전출 등이 발생하여 수도 요금을 중지 처리해야 함에도 변동 사항을 실시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원의 수도요금을 부당하게 감면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시정】

1.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자격 중지·전출·사망 등 ### 가구의 수도요금 감면을 중지 처리하시고, 수급권 자격 중지의 경우 동일 수용가에서 계속적으로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된 수도요금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2.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감면 대상자에 대한 물건지(수용가) 관리대장·감면대장 등을 전산관리 될 수 있도록 수도요금 부과·징수 프로그램을 고도화(감면자와 물건지 정보 입력 등)하여 감면대상자에 대한 변동 사항(자격 중지, 사망, 전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3. 수도요금 감면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 중지, 전출, 사망 등의 변동 사유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지 제14호 서식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도요금 지원 불합리

관계부서 ○○○○○○○과, ○○○○○○○과, ○○○과

내 용

- 이 사업은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생활용수를 공업용수 사용 단가로 환산하여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업이 제조공정에 직접 사용되는 사용량에 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타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예산편성 및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런데도 ○○○○○과와 ○○○○○과에서는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영일만배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직접적으로 제조공정에 소요되는 사용량 확인 및 지원규정 마련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입주한 기업이 실질적으로 생활용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업용수로 포괄적으로 환산된 차액 ###,###원을 과다 감면·지원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과장, ○○○과장과 협의하여 기업에 추가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제조공정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계량기 설치와 기업이 납부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일몰제 적용을 통한 공업용수 단가로 환산한 차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은 ○○○과장과 협의하여 기업이 제조공정에 직접적

으로 사용한 수도요금을 납부한 경우 공업용수 단가로 환산한 차액을 정기적으로 일자리창출과장에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은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영일만배후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제조공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기 설치 등을 상기 부서 협조요청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관계부서 ○○○과, ○○○과

내 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연가일수)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서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하도록 되어 있다.

$$\text{휴직자의 연가일수} = \frac{12\text{월} - \text{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text{월}}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3항에 의하면 연가보상비 지급은 “당해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6월 30일 현재 봉급액의 86퍼센트×1/30×5일”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

연가보상일수] - 이미 지급한 연가 보상비”로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와 ○○○과에서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했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휴직자 ★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과에서는 휴직자 ★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원을 회수하시고
- ○○○과장은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계획 미수립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및 결함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지속적인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보수·관리하여야 함에도,
- 그런데도 ○○과에서는 정수장(유강, 제2수원지, 공단) 정밀안전진단 용역(용역기간:20××.××.××.~20××.××.××., 용역비:###백만원)을 실시하고 종합평가 결과 ○○정수장 찻후장 등 ★★개소, 제2수원지 취수펌프실 등 ★★개소, ○○정수장 혼화지 등 ★★개소가 보수·보강 1순위(부재의 손상도 심각(D,E급), 방치 시 전체구조물 안전성 영향 등) 판정으로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어 정밀안전진단용역 진단결과에 따른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보수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관련 법령 등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수·관리할 수 있도록 보수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하수도 준설공사 설계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정확한 수량과 원가를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도와 20××년도 하수도 준설공사 설계 시 수량산출에 의거 협잡물처리 물량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명확한 수량산출의 근거없이 협잡물처리 물량 ###㎥(20××년 ★건 ###㎥, 20××년 ★건 ###㎥)를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하수도 준설공사 설계 시 명확한 근거에 따라 협잡물처리 물량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포항시 하수도사용조례 불합리한 조문 개정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포항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포항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포항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제17조(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항 제4호에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를 규정하면서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로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일 이전으로 한다. 건축물 용도·표시변경의 경우 허가일 또는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 균등 납부할 수 있으며, 1회 납부는 착공 후 1개월 이내 2회 납부는 준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공사기간으로 인한 부과시기와 납부시기의 차이로 원인자부담금의 합리적인 부과가 되지 않고 있으며, 건축물의 설계변경, 용도변경 등에 따른 변경 오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의 적용이 변경 당시의 고시단가를 적용함으로 당초 인·허가시의 고시 단가와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과장은 관련 법령 및 절차 등을 검토하여 포항시 하수도사용료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제 목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미 수립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 규정 12조에 관리자는 공공환경시설물의 기술진단 결과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세부개선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그런데도 ○○○○과에서는 포항시 구룡포 및 흥해하수처리시설(분뇨포함)기술진단용역(용역기간:20××.××.~20××.××.××, 용역비:###백만원)을 실시하고 기술진단보고서가 납품되었음에도 흥해하수처리장의 경우 기술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세부개선계획을 감사일 현재까지 수립한 사실이 없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관련 법령 등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수·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에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하수처리장 수질TMS 유지관리 위탁용역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수질자동측정장치(TMS)의 주기적, 전문적,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점검, 수리 등을 실시하여 시스템 운영의 원활한 가동과 자료수집의 정확성, 신뢰성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수질오염 분석과 신속한 환경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수처리장 TMS 유지관리 위탁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위탁용역업체가 과업지시서에 의거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 및 ○○하수처장 수질TMS유지관리용역(용역기간:20××.××.××~20××.××.××, 용역비:##백만원) 및 ○○하수처리장 수질TMS유지관리용역(용역기간:20××.××.××~20××.××.××, 용역비:##백만원)을 시행하면서 과업지시서의 점검구분 및 방법에 일상점검(2회/월), 정밀점검(1회/2월), 긴급점검(이상발생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별지서식 1~3의 수질자동측정기기 정밀점검표, 일상점검표, 긴급점검표에 의거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TMS유지관리용역업체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1호의 3 서식에 의거 점검만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관련 법령 등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하수처리장의 수질 TMS 유지관리 위탁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일 (주)○○ ○○○과 계약하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일반산업단지 내 배수지 및 가압장부지 조성 전에 지질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공보링비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였으나, 광명일반산업단지 개발구간의 절토 및 구간 터파기 현황, 지질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음에도 시공보링비 ##,###천원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의 시공보링비 ##,###천원을 감액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정수장 인입원수관로 이설공사 추진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일 ○○건설(주) ○○○과 계약하여 추진중인 ○○정수장 인입원수관로 이설공사에 대하여 가시설공 시트파일 근입길이(L)를 현장 실 시공에 따라 L=#.#m에서 L=#.#m으로 조정하여 공사비 #,###천원 정도의 감액요인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정수장 인입원수관로 이설공사의 가시설공(시트파일) 공사비 #,###천원을 감액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오천 ○○리~○○동 배수관 부설공사(2) 추진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3(별표6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 의하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일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일 (주)○○○○건설 ○○○와 계약하여 추진중인 오천 ○○리~○○동 배수관 부설공사(2)에 대하여 1 Line N0.46+32 지점 및 2 Line N0.15+18, N0.20+0 지점에 기존의 하수관 깊이가 낮아 이토변이 설치되지 않는 구간에 공기변 설치 ★개소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공사비 #,###천원 정도 감액요인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공사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일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오천 ○○리~○○동 배수관 부설공사(2)의 공기변 설치 ★개소에 대한 공사비 #,###천원을 감액하시기 바라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에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산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마을상수도 시설개량공사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액 정산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면 발주자는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공사를 시행하면서 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에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지급보증서 발급액을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족장 ○○(당마을) 마을상수도 시설개선공사 외 ★건 공사에 대하여 과다지급 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액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정수장 시설물 보수공사 정산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3(별표6의5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에 의하면 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에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의하면 보험료 적용은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며, 계약상대자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가설창고(콘테이너 1동)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 한 사실이 있으며,

○○정수장 배수지 단면복구 및 균열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수급인이 전

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 한 사실이 있으며, ○○정수장 침전지(★호, ★호) 단면복구 및 균열보수공사에 대하여 20××.××.××일 설계변경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함에도 낙찰율을 적용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지급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의 과다지급 한 가설창고(콘테이너 1동) 공사비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정수장 배수지 단면복구 및 균열보수공사의 과다지급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정수장 침전지(★호, ★호) 단면복구 및 균열보수공사의 과다지급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천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빗물펌프장) 추진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하여(환경부 고시 제2012-19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52호, 2012.09.28) 고시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일 ○○○○건설(주) ○○○과 계약하여 추진중인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빗물펌프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관부사(관기초)용 모래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을 반영하고, 아래 표와 같이 효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중인 사업장으로 감독업무차량비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서 제외하여 공사비 36,377천원(모래→순환골재 변경, 감액##,###천원, 감독업무차량비 제외, 감액##,###천원) 정도 감액요인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빗물펌프장 설치공사)에 관부사(관기초)용 모래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을 반영하고 감독업무차량비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서 제외하여 공사비 ##,###천원을 감액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추진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20××.××.××일 ○○건설(주) ○○○과 계약하여 장량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장사무실 가설 부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받는 공용 또는 공공용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협의(○○○○과-××××, 20××.××.××)를 완료하였음에도 현장사무실용 부지임대료 ###,###천원 정도를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으로 감액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의 현장사무실용 부지임대료 ###,###천원을 감액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지방서 기준, 현지어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토록 규정하고 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근거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096호, 2012. 8.10)에 의하면 하수관거의 기초 또는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관거의 종류, 지반의 토질, 지내력,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 등에 따라 다르며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설치용 순환 잔골재(이하 “모래대체 잔골재”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알칼리수로 인한 관의 부식방지를 고려하여 주철관, 알루미늄관, 아연도금관 등 금속제 관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알칼리성을 저하시킨 전처리된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수관거 설치용 모래대체 잔골재는 일반적으로 높은 내부마찰각, 양호한 지지력, 낮은 소성, 양호한 배수성 등의 물성을 보유하고 있어 하수관거 기초 및 되메우기에 적합한 재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하여(환경부

고시 제20××-×××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호, 20××.××.××)
고시하고 있다.

- 그런데도 ○○○과에서는 ○○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하여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근거 국토해양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따라 모래를 대체하여 순환골재를 하수관거 기초 또는 되메우기용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포항시 관내에서도 재료 수급이 가능하고,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을 고시하고 있음에도 순환골재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모래로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 공사비 ##,###천원을 과다설계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과장은 ○○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을 고시하고 있음에도 순환골재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모래로 과다설계 한 공사비 ##,###천원을 감액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